



: 2017-09-27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구단116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공사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7. 7. 13.
판 결 선 고 2017.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8,833,020원, 지방교육세 3,361,88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redacted]남 [redacted]군 [redacted]면 [redacted]리 [redacted]등 [redacted]필지 1,078,69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공유수면매립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토지



로서 2016. 5.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4. 4.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제177조의2 본문에 따라 피고에게 취득세 58,833,020원 지방교육세 3,361,8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0.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은 국가에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10.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9조 제1항의 '국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1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redacted] 지사는 2016. 6. 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국가(농림축산식품부장관)로부터 농지관리기금의 관리수탁 업무를 위탁 받은 기금수탁관리자이고, 매립 등의 간척사업도 사업시행자인 국가로부터 그 사업을 위탁받은 위탁시행자로서 그 매립지 등에 대하여 기금관리수탁자로서 소유권 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국가의 소유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②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르면, 매립지인 이 사건 토지를 관리·처분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립지 등을 처분



한 매각대금은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비과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과세 해당 여부

(가) 관련 규정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원고 또는 토지소유자가 시행하고(제10조 본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임대, 매각, 직접 사용, 일시 사용'의 방법으로 관리·처분한다(제14조 제1항). 한편 농림축산식품부훈령인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농어촌정비법」 제11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 중 '임대차, 매각, 일시사용 및 직접사용 대상 매립지 등'은 원고(기금수탁관리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판단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



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관련 법령에 의하면, 원고는 형식상 소유 명의뿐 아니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대, 매각, 직접사용, 일시사용' 등의 방법으로 관리·처분할 권능을 가지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취득세는 실질적인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취득행위'라는 사실을 과세객체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과세대상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국가가 관리하는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비과세 해당 여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제9조 제1항, 제26조 제1항과 같은 취지에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살펴본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국가로의 귀속을 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경우 그 대금이 국가가 관리하는 농지관리기금에 귀속되더라도 매각대금의 귀속을 부동산 자체의 귀속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국가 귀속을 조건을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



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부동산과 「농지법」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서울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 2017-09-27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5.12.29>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끝.